

- 1) 기획감사담당관(법무개혁담당): 규제심사
- 2) 복지지원과(여성가족담당): 성별영향분석 평가

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19-1223호
 - 가) 예고기간: 2019. 9. 10. ~ 9. 30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.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·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 주요내용으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한 차례 지원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

- 2019. 10.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